

# Cytec Specialty Chemicals(이하 “사이텍”)의 제품 판매 및 인도에 관한 일반약관

## (구체적인 법인명은 주문 확인서/운송서류/인보이스에 특정됨)

### 1. 총칙 (General)

- 본 약관은 사이텍에 대한 사이텍 제(이하 “제품”)의 주문과 사이텍이 제품의 판매 및 인도를 위하여 하는 청약,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이텍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 제3자 또는 사이텍의 고객(이하 “고객”)이 제시하는 조건은 명백히 그 적용이 배제된다.
- 고객은 사이텍이 서면으로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과 상충되는 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

### 2. 청약, 주문 및 계약 (Offers, Orders and Agreements)

- 사이텍의 모든 청약은 구속력이 없다.
- 고객은 주문과 청약의 승낙을 취소할 수 없다.
- 사이텍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청약에 구속된다. 직원의 구두약속 또는 직원과의 합의는 사이텍이 이를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사이텍을 구속하지 않는다.
-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3. 가격 (Price)

- 사이텍이 정하거나 사이텍이 동의한 가격은 부가가치세 그리고/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위 가격에는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운송비지급인도 조건(CPT)이 적용된다.

### 4. 인도기간과 인도 (Delivery Period and Delivery)

- 인도기간은 계약이 체결되고, 사이텍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모든 자료를 받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이텍의 재량에 따라 사이텍이 선금금을 받거나 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 개시된다.
- 인도기간은 단지 인도기간으로만 평가된다. 사이텍이 합의 또는 약정된 인도기간 이내에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이텍이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하고, 이후 고객이 서면으로 요구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도 합의된 제품을 여전히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서면통지로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경우, 인도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한 고객이 합의되거나 또는 사이텍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 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인도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 사이텍은 일부씩 나누어서 그리고/또는 계절회사를 통하여 인도할 수 있다. 본 약관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 일부 인도는 별개의 인도로 간주된다.

### 5. 운송 및 장비 (Transportation and Equipment)

- 사이텍이 운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이텍은 단독으로 운송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사이텍은, 고객에 마련한 컨테이너, 탱크, 트럭 그리고/또는 그 밖의 운송장비 수단들이 즉시 적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사이텍과 정부의 안전 규칙에 부합하며, 적재와 관련한 사이텍의 모든 지시가 지체없이 이행되는 경우, 위 운송장비를 적재하는데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 사이텍이 고객에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세미 벌크 컨테이너(semi bulk container) 및 기타 장비로서 사이텍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은 사이텍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또는 반환일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또는 예정된 용도에 따른 사용이 끝난 후에 조속히 사이텍에 반환되어야 한다.
- 제품 용기들은 식품, 물, 농산품, 약품 또는 화장품 용기로 재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6. 위험, 권리, 지적재산권 (Risk, Title, Intellectual Property)

- 제품의 멸실에 관한 위험은 운송업자에 의해 인도된 시점 또는 사이텍이 인도의 의무를 이행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 사이텍은, 손해, 비용 및 이자를 포함하여 기본계약 그리고/또는 위 계약과 같은 성격을 갖는 이전 또는 이후의 계약상 고객이 사이텍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판매 및 인도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한다. 고객은 위와 같은 대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에 제품에 관하여 유치권 또는 기타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인도된 상품 또는 상품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은 사이텍 또는 이에 관한 권리자인 제3자가 보유하며, 결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고객은 사이텍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텍의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 교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검수, 수령 (Inspection, Acceptance)

- 고객은 제품이 약정된 장소에 도달하였을 때 이를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령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이텍에게 발생한 운반비, 보관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고객은 수령시에 상품의 중량 및 수량과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과 관련된 클레임은 9조에 따라 사이텍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사이텍의 의무는 제9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 부족분(중량 및 수량)과 관련된 클레임은 수령 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사이텍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방식에 의하여 정당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사이텍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추가인도를 준비하거나 또는 부족분의 비율만큼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족분에 관하여, 사이텍은 상기의 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8. 불가항력 (Force Majeure)

-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동원령(Mobilisation), 혁명, 부지 또는 건물의 봉쇄, 파업, 특정 업무방해 또는 준법투쟁 태업 및 공장폐쇄, 운송방해, 원료 또는 에너지 부족, 사이텍이 제3자로부터 주문한 제품 및 용역의 공급지연, 사업운

- 영상 사고 등을 포함하여 사이텍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잠정적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방해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사이텍은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사이텍에 영향을 주는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사이텍은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정이 4주 이상 지속될 경우, 사이텍과 고객은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해함이 없이 모두 서면 통지로서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9. 보증 (Warranty)

- 사이텍은 제품이 자신의 제품명세서와 일치함을 보증한다. 사이텍의 판매 설명서와 상품이 일치함을 보증한다. 판매된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기 제공된 기술지도에 대하여 적합함(Fitness), 지적재산권 침해(Infringement) 또는 기타 다른 사항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적절한 방식에 의해서 하자에 관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사이텍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다시 제품을 인도하거나 문제된 제품의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과 관련하여, 고객은 제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이텍에 대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그 외 하자과 관련된 클레임은 하자를 발견할 날부터 14일 이내 제기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사이텍에 대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가. 사이텍의 지시에 따른 보관방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제품을 부적절하게 또는 비정상적인 목적에 사용하거나 합의된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 고객이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이텍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위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증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 인도된 제품상품의 하자과 관련된 사이텍의 책임은 본 절에서 기술한 보증상의 책임으로 제한된다.

### 10. 책임 (Liability)

- 사이텍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익의 손실, 그 결과에 당면히 부수하거나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사이텍의 책임은 언제나 배제된다.
- 사이텍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손해의 발생과 관련된 인도된 물건의 가격을 한도로 한다.
- 사이텍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이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사이텍의 피고용인 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이텍이 고용한 수급인들은 고객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상 허용되는 모든 방어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이텍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에서 고객은 사이텍과 그 피고용인 그리고 사이텍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한 수급인을 면책하여야 한다.

### 11. 지급 및 담보 (Payment and Security)

-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급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이텍은 언제나 전체 또는 일부 대금의 선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급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 고객은 당사자 사이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상계할 권리를 포기한다. 보증에 관한 청구가 있어도 고객의 지급의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 고객이 전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지 없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고객이 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하자마자 사이텍의 고객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이행기가 도래하고, 고객은 즉시 위 청구권과 관련하여 통지 없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고객은 사이텍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 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12. 지급정지, 계약해제 (Suspension, Recession)

- 고객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또는 적절하게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 (일시적) 지급유예 요청,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 사이텍은 비용, 손해 및 이자에 대한 청구권 이외에 임의로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사전에 서면으로 채무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고객은 기한의 도래여부를 불문하고 해제 시점에 사이텍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원을 지급한 후에 본 약관 4.2조와 8.2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3. 분쟁 및 준거법 (Dispute and Applicable Law)

- 사이텍이 다른 관할 법원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은 사이텍의 본점이 등기된 소재지 관할 법원의 독점적 관할로 한다. 사이텍과 고객 사이의 모든 계약은 사이텍 본점이 등기된 소재지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고객에 대한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사이텍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법률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 14. 일부무효 (Severability)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되거나 집행할 수 없을 경우, 무효로 되거나 집행될 수 없는 부분 또는 규정은 위 규정의 본래 목적을 가능한 범위에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이텍은 전체 계약을 취소하거나 유효한 나머지 조항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